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9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9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박성춘	문광선	권창석	김종순	01/08 이비오	
협조	총무과장 박봉주				
	전산정보과장 이창호				

-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
선거사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계획

2016. 1.



성 동 구

(자치행정과)

- 2016. 4. 13.(수) 실시 국회의원 선거 대비 -

선거사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계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고 선거사무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완벽한 법정선거사무의 추진을 위해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I 선거 개요

- 선거 일: '16. 4. 13.(수) 06:00 ~ 18:00
※ 사전투표: 4. 8.(금) ~ 4. 9.(토) 06:00~18:00
- 대상선거: 1개 【국회의원】
- 투표구수: 67개소 (※ 제18대 대선 65개소, 제6회 지방선거 67개소)
- 개 표 소: 1개소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예정)
- 예상 유권자수: 251,181명(19세 이상 주민,'15.12.31. 기준)

주요 선거 일정

- ▶ '16. 1. 14. (선거일전 90일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자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 '16. 2. 13.(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 '16. 2. 24. ~ 3. 4.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 '16. 3. 24. ~ 3. 25. 후보자등록 신청
- ▶ '16. 3. 30. ~ 4. 4. 재외투표소 투표
- ▶ '16. 3. 31. 선거기간 개시일
- ▶ '16. 4. 8. ~ 4. 9. 사전투표소 투표
- ▶ '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II

선거추진반 구성·운영

□ 구성개요

○ 운영기간: 2016. 1. 4. ~ 4. 13.

※ 추진반 사무실 설치: 2016. 1. 4.(월) ~ 1. 8.(금)

※ 투·개표 상황실 설치·운영: 4. 8.~ 4. 9., 4. 13.~ 4. 14.

- 장소: 6층 교육장

○ 장 소: 4층 선거사무추진반

○ 인원편성: 9명

- 선거사무 총괄: 자치행정팀장

- 선거사무 추진: 8명(6급 1, 7급 이하 7)

□ 운영체계 및 기능

○ 운영체계: 행정자치부 ↔ 市추진반 ↔ 區추진반 ↔ 洞
(市선관위 협조지원) (區선관위 협조지원)

○ 운영장비

- 책상 5개, 회의 테이블 1개, 의자 5개, 전화기 3개, 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동별 문서함 1개

○ 주요기능

- 선거사무의 공명정대한 관리

- 일정별 법정선거사무 추진 관리 및 투·개표소 설치 등 현장 점검

- 선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등 파악 및 동향보고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등

※ 2016. 1월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 정비 중

□ 선거사무 추진반 직원 사무분장

직급	성명	담당업무	직급	성명	담당업무
행정6급	문광선	선거사무 총괄	행정8급	김영의	선거전산, 선거인명부
행정7급	김진철	선거상황실 운영		지원인력 (추진반)	선거권 없는자 관리, 재외국민·외국인 관리
행정6급	문해경 (추진반)	법정선거사무, 일정별 관리, 선거인사	행정7급	김주현	거소투표관리, 투개표진 행 및 결과작성 등
행정7급	박성춘	선거계획, 선거동향	행정8급	우현진	투표구·투표소 관리 선거업무 지원
행정7급	이경채	선거예산, 선거상황실 운영			

Ⅲ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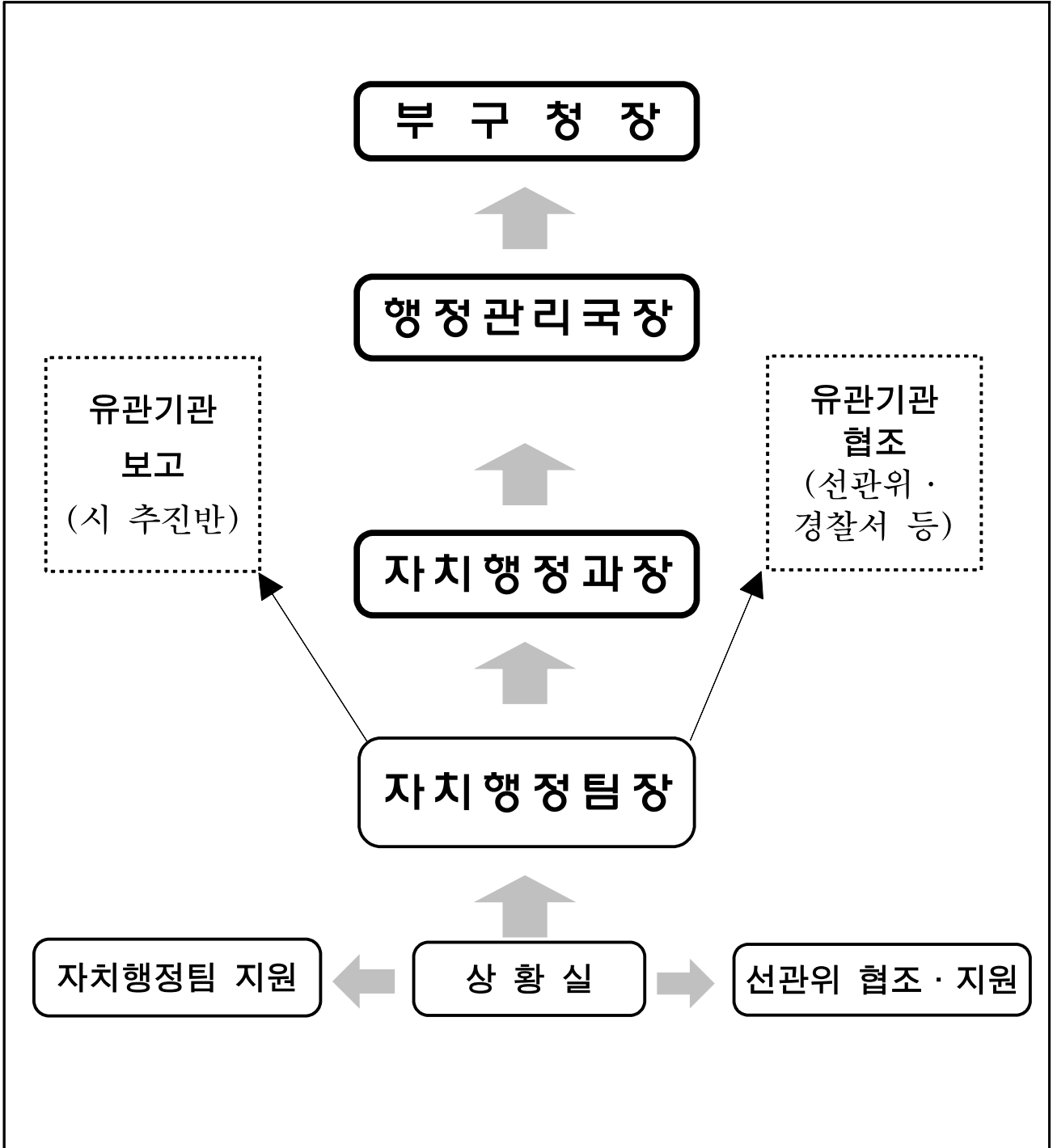
- 선거추진반 설치에 따른 부서별 지원사항: '16. 1. 8.(금)까지 준비 완료
- 부서별 지원사항

부서명	지원사항	비고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추진반 인력지원(2명)</u> ※ 행정6급 문해경 1명 기배치(추가 1명 배치 필요) ○ 선거추진반 설치(4층 차량관리실 옆 사무실) ○ 비품 준비: 책상(5), 의자(5), 회의탁자(1), 전화기(3) ○ 통신선, 전기선 등 설치 ※ 투·개표 상황실 설치: 4. 7.(목) 17:00까지(6층 교육장)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기(1), 팩시밀리(1), 동별 문서함(1), 선거상황판 등 기타비품 	
전산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등 전산장비 및 통신망 구축 	

- 선거사무 추진상황 보고(각 동)
 - 각종 선거사무 관련 일일보고 사항. 끝.

선거사무추진반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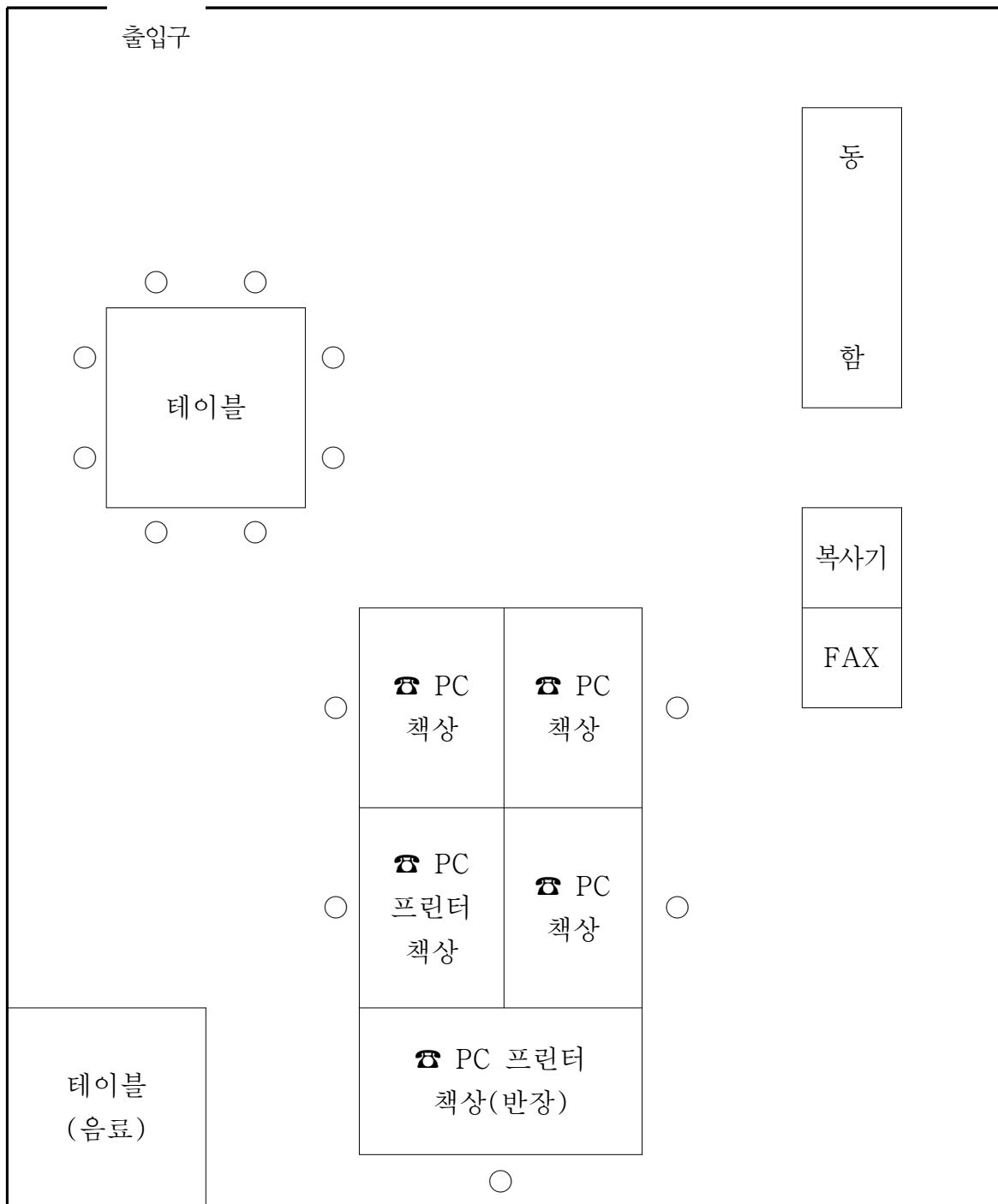
<자치행정과>



<붙임 2>

선거사무추진반(내부) 배치도

(4층 차량관리실 옆 사무실)



참고 1

2016. 4. 13.(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5.10.16.부터 '16. 5.13.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11.15.부터 '16. 2.13.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31.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82의2④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참고 2

일정별 보고사항 및 서식

일 정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비 고 (법정일정)
1. 14. (선거일 전90일)	(목)	○ 입후보 제한받는 자 사직현황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1.14. (목)	사직기한 (선거일전90일)
2.24. (선거일 전49일)	(수)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2.24. (수)	
3. 22. (선거일 전22일)	(화)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연령별 현황 포함)	3.22. (화)	
3. 28. (선거일 전18일)	(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사유별 신청자수, 일자별 신청자수)	3.28. (월)	
4. 1. (선거일 전12일)	(금)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연령별 현황, 확정내역)	4. 4. (월)	
4. 3. (선거일 전10일)	(일)	○ 투표소 공고상황 (투표소 설치 장소, 건물 층수별 현황)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상황	4. 4. (월)	
4. 7. (선거일 전6일)	(목)	○사전투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투표소 설치상황	4. 7. (목)	
4. 11. (선거일 전2일)	(월)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투·개표소 설치상황	4. 11. (월)	

※ 서식은 추후 공문 시행 예정.